## 조선봉건왕조형률은 전제국왕에 대한 침해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

천 세 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 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 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김일성**전집》제65권 399폐지)

국가주권을 장악하고 전제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적통치제도를 확립한 조선봉건왕조 통치배들이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중앙집권적통치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지해나가려면 선차적으로 봉건정권의 대표자인 전제국왕을 누구도 침해할수 없게만들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봉건국가는 왕과 왕권의 안전 그리고 왕과 왕실소유와그에 속하는 재산에 침해로 되는 행위들을 가장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무엇보다먼저 봉건 통치배들의 반인민적통치에 저촉되는 모 든 행위를 국왕에 대한 반역행위로 탄압 하는 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적인 사회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반인민적국가였 던것만큼 소수 봉건지배계급의 계급적리 익을 옹호하며 절대다수 근로인민을 억압 하기 위한 통치체제를 갖추고있었다.

국왕은 봉건지배계급을 대표하여 전국 의 인민들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 하는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였다.

이로부터 조선봉건왕조는 형률에 봉건 국가정권의 대표자인 국왕과 그의 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조건들을 설정하고 그를 범 하는 사소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범죄시하 여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국왕에 대한 반역행위는 봉건국가가 《극악한 범죄》로 규정한 《10악》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범죄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반역음모로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행위를 하면 모반 죄로 된다고 하였다.(《대명률직해》명례률)

모반죄의 가장 일반적인 침해관계는 왕과 봉건정권의 대내외적안전이였다. 그러므로 왕의 신변과 봉건정권의 대표자인 왕권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일체 행위는 다모반죄로 되였다.

모반죄는 파벌이나 봉기군 같은것을 무어가지고 왕을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하기위하여 반란을 음모하거나 일으키면 모반 죄로 되였다. 그리고 왕을 반대하며 정권을 장악하기위한 기도밑에 개별적으로나집단적으로 봉건국가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하는 음모에 가담한 행위도 모반죄로 되였다.(《경국대전》,《대명률직해》참조)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모반죄를 왕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음모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행위를 주관적표징으로 보았다.

모반죄의 범죄자로는 왕의 신변과 왕권을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에서 일으킨 폭동이나 봉기군, 반란에 참가한 사람이면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누 구나 다 될수 있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대법전들을 편찬 하면서 모반죄에 대한 규제의 폭을 대폭 넓혔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봉건국가는 대체로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따라 모반죄를 처리하였다. 물론 조선봉건왕조가 선 초기에도 정권을 뗴우고 밀려난 고려왕족을 비롯한 량반세력들의 반항과 대신중심정치 의 폐지로 하여 실권을 잃은자들의 권력 쟁탈전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경국대전》에는 국왕을 침해하는 행위로 임금과 관련된 불온한 말을 한것 한가지만 규정하고 역적행위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조선봉건왕조전 반기는 봉건국가의 통치체제가 기본적으로 정비되고 조선봉건왕조 500년간을 놓고볼 때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가장《안정》되였다고 하는 시기였으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반행위가 적었고 설사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도《대명률직해》의 적용으로 대치하려고 하였기때문에 《경국대전》에 모반행위로 되는 구체적범죄조건들을 규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 시기에 와서는 봉건국가의 통 치체제가 혼란되고 권력쟁탈전이 심해졌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 지배계급의 내부모순은 날이 갈수록 더 첨예화되고 봉 건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보다 적극적인 실력행사로 넘어갔다.

이 시기에 와서는 봉건국가의 통치체제 가 혼란되고 권력쟁탈을 위한 《당쟁》이 국 왕의 친척을 끼고 임금을 교체하기 위한 《반정(어지러워진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 다는 뜻으로서 나쁜 임금을 내려앉히고 새 임금을 대신 내세우는것)》시도로 번져갔으 며 《세도정치》도 역시 봉건통치질서를 극 도의 혼란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왕권을 심 히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조선봉건왕조가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강화하고 그에 의 거하여 전조, 공물, 부역, 신역, 환자 등 여 러가지 명목으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 하고 그들을 봉건국가의 정치생활에서 배 제하는 등 신분적예속과 억압을 강화한것 과 함께 개별적량반지주들의 토지겸병과 착 취와 억압도 날을 따라 강화된것은 인민 들로 하여금 반봉건투쟁에 궐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변화된 사정들은 봉건국왕의 신변과 봉건정권의 안전을 담 보할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왕조는 후반기에 들어 와서 《속대전》을 편찬하면서 국왕의 신변과 권력을 침해하는 모반행위로 되는 범죄조건들의 규제폭을 훨씬 넓혔으며 그 범행자들을 가차없이 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속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군복차림으로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자, 반역을 음모하였다고 허위고발한자는 부대시참하도록 하였다. 부대시참은 참형으로 판결되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집행하는 사형으로서 《속대전》에 규정된 형벌들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였다.

1786년 1월 《대전통편》을 편찬하면서 조 선봉건국가는 국왕의 신변과 권력을 강화 하는데 저촉되는 범죄조건들을 더 규제하 였다. 《대전통편》의 《형전》에는 명패나 마 패를 파손한 행위를 모반죄에 포함되는 행 위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 인민들의 반봉건적진출이 전반기에 비하여 보다 강화되였으며 지배계급내에서의 정권 쟁탈전이 심화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형률을 강화하여 그 징벌적효과를 높이는데서 찾았던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는 전제국왕의 신변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역음 모로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봉 건지주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거나 왕권을 탈 취하려는 적대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범한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도 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다음으로 종묘나 산 릉, 궁궐을 파괴하는 행위를 역적행위로 몰 아 탄압하는 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종묘나 산 릉, 궁궐을 파괴하는 행위는 봉건국가가 《극악한 범죄》로 규정한《10악》에 속하는 가장 엄중시한 범죄의 하나로서 모반죄 다 음가는 엄중한 범죄로 취급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종묘나 산릉, 궁궐을 파괴하는 행위를 모대역죄라고 하 였다. 실천적으로는 모반죄와 모대역죄를 합쳐 모반대역죄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모 반죄와 모대역죄는 서로 다른 범죄의 종 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국가정권의 대표자 인 국왕과 그의 권력을 신비화하고 절대 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종묘나 산릉, 궁궐을 침해하는 범죄조건들을 설정하 고 그를 범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징벌하 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큰 역적음모로서 종묘나 왕릉, 왕궁을 파괴하는》행위를 하면 모대역죄로 된다고 하였다.(《대명률직해》제1편) 왕과 왕권을 침해할 목적에서 종묘나 산릉, 왕궁을 파괴하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나 집단은 모대역죄로 되였다. 종묘나 산릉, 왕궁을 파괴하려는 기도밑에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봉건국가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하는 음모에 가담한 행위도 모대역죄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모대역죄는 왕과 왕권을 침해하는것을 목적으로 종묘 나 왕릉, 왕궁을 파괴하는 음모에 고의적 으로 가담한 행위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범 죄는 그 성격상 파실로 성립될수 없었다.

모대역죄의 범죄자로는 왕과 왕권을 반대하려는 목적에서 종묘나 왕릉, 왕궁을 파괴하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신분에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다 될수 있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이래 봉건국가는 대 법전들을 편찬하면서 여기에 모대역죄를 규 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대역죄의 종류는 전 반기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 봉건국가는 대체 로 《대명률직해》에 준하여 모대역죄를 처 리하였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전반기 법전들에는 모대역죄 로 되는 침해조건들이 규정되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는 봉건국가의 통치체제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였다고 하는시기였으므로 모대역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설사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고 해도 봉건국가는 《대명률직해》에 준하여 처리하려고 하였기때문에 《경국대전》을 비롯한법전들에 모대역행위로 되는 구체적인 범죄조건들을 규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는 《당쟁》,《세도정치》등으로 하여 봉건통치체제가 혼란되였으며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보다 적극적인 실력행사로 이행되여갔다. 이런 사정들로 하여 봉건국왕의 특권적인 권위를 담보할수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봉건국가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속대전》을 비롯한 법전들을 편찬하면서 모대역행위로 되는 범죄조건들을 규제하였으며 그 범행자들을 엄격히 징벌하도록 하였다.

《대전통편》의《형전》에는 릉, 원, 묘의 나무를 도벌한 행위와 릉침(릉을 다르게 이르는 말)의 해자(릉, 묘 같은 곳의 경계) 바깥경계선의 금지표식안에 몰래 묘를 쓴 행위 등을 역적행위 즉 모대역행위로 규정하였다.

《대전통편》에서 역적행위로 규정한 행위들에는 임금이나 종묘, 사직을 위태롭게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저지른 범행만이 아니고 집을 짓든가 판자로 쓰기 위하여 임금이나 왕족의 무덤구역안에서 나무를 찍든가 자기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하여 금지구역안에 들어간 행위들도 속하였으며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관계없이 임금의 권위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행위로 보고 모대역죄에 포함시켜 역적행위로 몰아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 인민들의 반봉건적진출이 전반기에 비하여 강화되고 지배계급내에서의 정권쟁탈전이 심화됨에 따라 약화되여가는 국왕의 권위를 추켜세우고 보호하여 봉건지주계급의 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취하여진 조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는 전제국왕의 권위를 보호하여 봉건정권을 유지강화하 려는 목적에서 종묘나 산릉, 왕릉 등을 파 괴하는 행위를 왕을 침해하는 적대적인 행 위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그 범행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다음으로 임금의 신 변과 권력에 저촉되는《요서(요사스러운 내 용을 쓴 책 또는 글), 요언(불온한 말)》행 위를 범죄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정권은 봉건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지배권이다. 그러므로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봉건정 권의 대표자인 국왕을 침해하는 언행이나 글에 대하여 엄격히 징벌할것을 형률에 규 정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초기에 역적행위로 되는 《요서, 요언》은 《대명률직해》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처형하기로 하였다.

조선봉건국가형률에 의하면 국왕을 반대하는 불온한 말이나 글을 류포시킨 죄는 왕권의 대내적안전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이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말이나 글을 류포시키는 일체 행위는 국왕을 침해하는 요서죄, 요언죄로 되였다.

왕권을 탈취하거나 약화시킬수 있는 글이나 말로써 민심을 혼란시키는 선동을 한행위를 요서죄, 요언죄의 객관적표징으로보았다.

왕권을 탈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글이나 말로써 민심을 혼란시 키는 선동을 한 행위를 요서죄, 요언죄의 주 관적표징으로 보았다. 때문에 왕권을 탈취 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사가 없이 불온한 말이나 글을 류포시킨 행위는 국왕과 봉 건정권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으므로 국 왕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반범죄로 되였다.

그러나 왕권을 빼앗을 구체적인 반란음 모를 선동하는 글이나 말 그리고 그러한 목 적밑에 왕의 인신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글 이나 말을 류포시켰을 때에는 《반역음모 로서 사직을 위태롭게 한》 모반죄에 걸어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처음에 역적행위로 되는《요서, 요언》을《대명률직해》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처결하기로 하였으나《경국대전》을 제정하면서 그《형전》에《란언(정사와 관련한 불온한 말)》과《닉명서(이름을 숨긴 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요서, 요언》죄로 되는 범죄의 포괄범위를 보다 더 넓혔다. 그리고 형량도《대명률직해》에서보다 더 높혔다.

조선봉건왕조는 전제군주인 임금에게 저촉되는 말이나 글을 조작하여 류포시키는 것을 임금의 《절대적권위》를 훼손하는 행 위로서 국왕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행 위이며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여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으로 처벌 하도록 하였다.

《대명률직해》의 《형률》에 의하면 임금에게 해로운 글이나 요언을 조작하여 류포시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글을 얻어 집에 숨겨두고 관청에 바치지 않은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임금에게 저촉되는 실지로 매우 유해로운 말을 한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름을 숨긴 글에 대해서는 설사 나라일에 관계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자지간에까지도 알리지 말아야 하며 만일 퍼뜨린자나 여러날이 지나도록 소

각해버리지 않은자는 해당 법조문에 따라 처결(도형에 처하게 되였음)한다고 하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 임금에게 저촉되는 《란언》과 《니명서》를 특별히 규정하고 《대명률직해》에 규정한것보다 형량을 높이 정한것은 고려왕조를 찬탈하고 조선 봉건왕조를 세운 리씨문벌을 비롯한 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과 고려왕족들, 고려량반통치배들과 그 후손들의 불만과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산물이였다.

《경국대전》의《형전》에서는《란언》과 관련하여《인정과 도리로 보아 몹시 해롭다》 거나《그다지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불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봉건통치배 들에게 거슬리는 일체 언행에 대하여 제 한없이 처형하게 하는것으로서 다른 범죄 조건의 규제방식과 구별되는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저들의 정권실 현에 장애로 된다고 인정하는 글이나 언 행에 대하여 그 자그마한 요소에 이르기 까지 《란언》죄, 《닉명서》죄에 걸어 징벌함 으로써 전제왕권에 기초한 봉건정권을 안 전하게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므로 왕권 을 침해하는 글이나 말은 물론 봉건적인 억 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사소한 반 항이나 항변도 다 여기에 걸려 탄압과 학 살의 대상이 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다음으로 국왕에 대 하여 《공경스럽지 못한》행위를 범죄로 몰 아 탄압하는 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국왕에 대하여 《공경스럽지 못한》행위는 조선봉건국 가가 《극악한 범죄》로 규정한 《10악》에 속하는 가장 엄중시한 범죄의 하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크게 공경스 럽지 못한》행위를 대불경죄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국가정권대표자인 국왕의 권위를 보장하고 봉건지주계급의 계 급적지배를 철저히 실현하며 왕과 왕실소 유와 그에 속하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대불경죄를 설정하고 그를 범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징벌하도록 하였다.

대불경죄의 가장 일반적인 침해관계는 국왕의 《존엄》과 《위엄》에 대한 대내적안 전이였다. 그러므로 국왕에 대하여 《공경 스럽지 못한》일체 행위는 다 대불경죄로 되였다.

대불경죄의 주객관적표징은 모반대역죄 와 같았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서는 《크게 공경스 럽지 못한짓으로서 종묘나 왕릉과 같은 곳 에 차려놓은 물건, 임금이 사용하는 수레 나 의복을 훔쳐냈다든지, 임금의 인장을 위 조한다든지, 임금이 먹을 약을 처방대로 짓 지 않거나 약봉지를 잘못 쓴다든지, 임금 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때 약을 쓰면서 먹 여서는 안될것을 섞어넣는다든지, 임금이 탈 배를 견고하게 뭇지 못하는 등의》행 위를 하면 대불경죄로 된다고 하였다.(《대 명률직해》제1편) 즉 왕과 왕실관련물자 를 훔치거나 그의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 는 등 왕의 《존엄》과 《위엄》에 방해되는 일 을 하면 대불경죄로 되였다. 때문에 대불 경죄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 죄조건들이 포함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은 왕과 왕실소유 및 그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사소한 침해행위에 이르기까지 다《10악대죄》의 대불경죄에 걸어 참형과 같은 극형 또는 중형으로 탄압하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종묘와 릉묘에 미신을 위하여 차려놓은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도 대불경죄에 걸려 참형당하여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왕의 일가친척들의 재산에 대한 사소한 침해도 다《강도》,《절도》등《도적》으로 되여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였다. 실례로 《속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왕실창고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물론 대궐뜰에 깔아둔 벽돌을 파내여 가진 행위도《절도》죄로 되며 이런 행위들은《강도》죄에 준

하여 징벌하게 되여있었다.

일반생활용품을 사용하는데서도 임금만 이 사용할수 있는 물건을 따로 규정하여 놓고 그를 침범하는 행위도 탄압하도록 하 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높고낮은 관리로서 금그 릇, 은그릇, 푸른빛으로 그림을 그린 흰자 기, 붉은 옻칠한 그릇, 색물감, 꽃방석, 명 주로 만든 꽃과 봉황새, 금지와 은지로 만 든 꽃송이 등을 사용하는자는 장형 80대 에 처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왕만이 사 용할수 있는 물건과 치레거리는 그 누구 도 사용할수 없게 하였다. 《경국대전》에서 는 임금만이 사용할수 있는 물건을 사용 한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고 하여 형벌 을 낮게 적용하는것으로 규정하였지만 그 러한 행위가 직접 임금과 관련될 때에는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짓으로 되며 대불 경죄에 걸려 사형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규제는 다 국왕의 신분을 더욱 《존 귀》하고 《위엄》있는것으로 만들어 왕에 대 한 환상을 더욱 강요함으로써 인민들의 투 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왕과 왕실 및 그 족속들의 소유와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철 저히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국왕이 사용하는 인장이나 지시문을 위

조하거나 그리고 왕의 지시가 아닌것을 왕의 지시라고 속여 전하는 등 왕의 《존엄》 과 《위엄》을 침해하는 행위도 대불경죄로 되였다.

봉건국가의 중요정책들은 전제군주인 국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비준되여 집행된다. 그러므로 국왕이 사용하는 인장이나 지시문을 위조하거나 왕의 지시를 속여전하는 등의 행위는 봉건지배계급의 독재정치실현과왕의 《존엄》과 《위엄》에 저해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왕조형률은 이러한 행위들을 대불경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철저히 징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형률은 전제국 왕을 침해하는 범죄조건들을 특별히 규정 하고 그 범행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였 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형률의 기본사명 이 전제왕권에 기초한 봉건정권의 대내외 적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었다는 사정과 관 련된다.

우리는 착취사회의 국가와 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